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의2 (비상근예비군제도)

'25년 공군 장기 상비예비군(비상근예비군) 2차 수시 모집 및 선발 공고

공군 『장기 상비예비군*(비상근예비군)』 2차 수시 모집 및 선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상비예비군 : 상시 (전투)준비를 하는(또는 되어 있는) 예비군.
비상근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용어 변경 추진(병역법, 예비군법 개정 중)

2025년 4월 28일
국 방 부 장 관

1 모집 계획

가. 모집부대

| 모집부대 (지역) | 동원지정(훈련)부대 | 문의 | 선발 인원 |
|----------------|------------------|--------------|-------|
| 제1전투비행단(광주) | 여수기지대대 | 062-940-1125 | 3명 |
| 제5공중기동비행단(부산) | 울산기지대대 | 051-979-2124 | 2명 |
| 제10전투비행단(수원) | 인천기지대대 | 031-220-1024 | 3명 |
| 제15특수임무비행단(성남) | 김포기지대대 | 031-720-3143 | 3명 |
| 제18전투비행단(강릉) | 양양기지대대 | 033-649-2035 | 3명 |
| 제60수송전대(대구) | 604대대 | 053-989-2811 | 1명 |
| 제91항공공병전대(충주) | 911,912,913 공병대대 | 043-849-6812 | 3명 |

나. 모집 직책 및 인원 : 100일 복무, 15명선발(3명 예비)

| 부대 | 직책 | 계급 | 특기 | 인원(명) |
|----------------------|------------|----|----------|-------|
| 제1전투비행단 여수기지대대 | 운영통제실장 | 소령 | 보급수송 | 1 |
| | 행정 담당 | 하사 | 인사교육 | 1 |
| | 시설 담당 | 중위 | 공병 | 1 |
| 제5공중기동비행단 울산기지대대 | 행정 담당 | 하사 | 인사교육 | 1 |
| | 군사경찰중대장 | 대위 | 군사경찰 | 1 |
| 제10전투비행단 인천기지대대 | 운영통제실장 | 소령 | 보급수송 | 1 |
| | 행정 담당 | 하사 | 인사교육 | 1 |
| | 보급 담당 | 하사 | 장비물자보급관리 | 1 |
| 제15특수임무비행단 김포기지대대 | 운영통제실장 | 소령 | 보급수송 | 1 |
| | 행정 담당 | 하사 | 인사교육 | 1 |
| | 정보통신중대장 | 대위 | 정보통신 | 1 |
| 제18전투비행단 양양기지대대 | 운영통제실장 | 소령 | 보급수송 | 1 |
| | 행정 담당 | 하사 | 인사교육 | 1 |
| | 행정 계장 | 중위 | 인사교육 | 1 |
| 제60수송전대 | 철도수송 담당 | 상사 | 항공운수 | 1 |
| 제91항공공병전대 | 1대대 작전운영담당 | 중사 | 공병건설 | 1 |
| | 2대대 작전운영담당 | 중사 | 공병건설 | 1 |
| | 3대대 장비운영담당 | 중사 | 공병건설 | 1 |

가. 지원자격 :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1) 모집부대에서 장기 상비예비군 훈련(복무)을 희망하는 예비역 장교, 부사관, 병

- * 동원훈련 미대상자(당해년도 전역자, 연차 초과자 등)는 동원훈련 2박 3일 참석한다는 조건하에 지원 가능
- * '25년 계급별 연령정년 이내자(병사는 '25년 기준 8년차까지 지원 가능)

| 구분 | 장 교 | | | 부 사 관 | | | | 병 |
|----------|-----------------------|-----------------------|-----------------------|-----------------------|-----------------------|-----------------------|-----------------------|--------------|
| | 중령 | 소령 | 중·대위 | 원사 | 상사 | 중사 | 하사 | |
| 지원 가능 | '72.1.1일 이후 출생자 | '79.1.1일 이후 출생자 | '82.1.1일 이후 출생자 | '70.1.1일 이후 출생자 | '72.1.1일 이후 출생자 | '80.1.1일 이후 출생자 | '85.1.1일 이후 출생자 | 0~8년차 예비군 |

2) 「병역법」 제44조(병력동원소집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소요 계급 및 특기에 적합한 자 ['9)항'의 유사특기자 포함]

3) 국방부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별표23, 별표24)에 따라 법규보류(경찰관, 소방관, 군무원 등) 및 방침보류(학생, 교사, 청원경찰 등) 직종 종사자는 제외 단, “41세 이상 간부” 방침보류자는 지원 가능

4) 선발 후 '25. 12월까지 훈련(복무) 가능자

* 연중 소집일수 고려 100일 복무

5) 현역 복무시 모집 소요직위 근무 경력이 있거나, 상비예비군으로서 성실하게 임무수행 가능한 자

6) 지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 「군인사법」 제10조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위 가)·나) 항의 지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 심의일을 기준으로 판단

7) 선발 계급별 지원 가능 계급

| 구분 | 선발 계급 | | | | | | |
|----------|--------|--------|--------|------------|------------|--------|------------|
| | 중령 | 소령 | 대위 | 원사 | 상사 | 중사 | 하사 |
| 지원 가능 계급 | 중령, 소령 | 소령, 대위 | 대위, 중위 | 원사, 상사, 중사 | 상사, 중사, 하사 | 중사, 하사 | 하사, 중사, 병장 |

* 근거 : 총무3700 국방부 집행계획 (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 동원지정 방침

8) 병력동원후순위 조정 대상자(방위사업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는 지원 불가

9) 모집 직위의 유사 특기자 지원 가능

| 구분 | 해당 특기 | 유사 특기 | |
|-----|--------|-------|------|
| | | 1차 | 2차 |
| 장교 | 보급수송 | 군수 | 무기정비 |
| | 공병 | - | - |
| | 군사경찰 | - | - |
| | 정보통신 | - | - |
| | 인사교육 | 정훈 | 재정 |
| 부사관 | 인사교육 | 재정 | 법무 |
| | 장비물자보급 | 항공운수 | - |
| | 항공운수 | 수송운영 | - |
| | 수송운영 | 항공운수 | - |
| | 공병건설 | 전략설비 | 기계설비 |

※ 장교는 해당 특기와 유사 특기, 부사관은 특기와 무관하게 지원가능. 단 상비예비군 선발 심의위원회에서 계급, 특기, 군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무수행이 가능한 최적의 인원 선발

2 세부 계획

가. 선발 일정

| 구 분 | 추진일정 | 세부 내용 |
|----------------------------|---------------------------------------|--|
| 지원서 접수 / 신원 조사 | '25. 4. 28.(월) ~ '25. 5. 18.(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 / 예비군 앱 로그인 후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비예비군 지원접수(홈페이지 우측 하단)에서 지원서 작성(접수대기) ② 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에서 신원조사 서류제출 ③ 상비예비군 지원접수에서 신원조사 서류제출 확인(접수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접수번호 확인 (합격자는 접수번호로 발표 예정) * 지원접수 및 신원조사 서류제출 방법 : 붙임 #1 참고 ※ 신원조사 결과는 최종선발 심의에 반영되며,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
| 면접 | '25. 6. 9.(월) ~ 6. 13.(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주관 : 모집부대 (1·5·10·15·18 비행단, 60·91전대) • 대상, 일정, 복장 등은 개별 통보(기간 중 1일) * 면접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인터넷 민원 24/ 무료발급) |
| 합격자 발표 | '25. 6. 27.(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상비예비군 지원접수) 및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는 종합병원 및 건강검진기관 발행 신체검사서 또는 국가건강검진 결과(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자료만 인정)를 출근시 제출 |

* 면접 및 합격자 발표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나. 훈련(복무)

1) '25. 7월 ~ 12월 중 100일 이내

* 훈련(복무) 소집은 대대급 부대운영에 따라 월 단위 소집통지

2) 1일 훈련(복무) 시간은 현역 일과표 적용

3) 복장은 현역과 동일한 전투복 착용, 해 직책 소속 부대에서 근무

4)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 불참(미출근, 무단이탈 등) 또는 불성실 근무 시 심의에 의해 상비예비군 선발(복무) 해지

5) 훈련(복무)은 평일(월~금), 주간 훈련(복무)을 기본으로 하되, 부대훈련 계획에 따라 각종 훈련 및 단기 상비예비군 소집훈련, 병력 동원훈련 등을 위해 휴일 및 야간훈련 시행 가능

* 훈련(복무)일은 월 단위로 부대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병력 동원훈련 등 주요 부대훈련의 경우는 사전 지정

6) 숙소 미제공

7) 훈련(복무) 시 4대 보험(연금, 의료보험 등)과 연가는 미제공

다. 주요 과업

1) 부대 창설준비 업무 및 동원훈련/단기 상비예비군 훈련지원

가) 증·창설 업무철: 동원 자원 지정현황 점검 등 절차 숙지 및 발전

나) 치장 물자(장비)관리: 물자 수량확인, 보존상태 점검 및 장비 관리 점검 등

다) 동원 업무지원: 소요산정, 소요제기, 지정결과분석, 대체지정 건의 등

라) 예비군 훈련지원: 예비군 훈련 교육장/숙소/전투장구 관리지원, 훈련 교관/조교 업무지원 등 전반적인 사항

2) 기타 행정업무

라. 보상비 / 혜택

1) 보상비 : 1일 15만원 지급

* 단, 연차 이내자(간부 : 1~6년차, 병 : 1~4년차)는 동원훈련 참석시 해당연도 동원훈련 보상비 기준액('24년 기준 82,000원)을 지급

2) 혜택

가) 본인에 한하여 연중 군 마트(BX) / 소속부대 복지회관 이용 가능

나) 개인 전투복·전투화 등 피복 지급(既 보유 전투복·전투화 반납)

다) 부대에 소집되어 있는 기간 중 군 병원 진료(치료, 투약 등) 가능

라) 예비역 간부 진급 희망 시 가점 부여

마) 우수 복무자는 예비군의 날 모범예비군 추천

3 유의사항

- 가. 선택복무 일수는 '25년 잔여 일수에 따라 감소 편성되거나 조정될 수 있음. 지원자가 조정된 복무일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의없이 해지 가능
- 나. 예비군 홈페이지(상비예비군 지원)에 접속하여 지원서 작성시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함.
 - 1) 본인의 계급, 특기, 거주지 등을 고려 희망부대 및 직책 선택
 - 2) 본인이 지원할 직책의 유형 (I)을 확인 후 희망 복무일수 100일 선택
* 예 1) 유형 I: 제1전투비행단(여수기지대대) 운영통제실장 선택 후 ⇨ 100일 선택
- 다. 제출서류의 기록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 발견 시 합격을 취소함.
- 라.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발심의 결과는 직책별 예비 합격자 1명을 포함하여 발표하며, 합격자 포기 시 예비 합격자를 선발함.
- 마. 직장인(공무원 등)은 해당 소속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겸직 승인 대상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직장인의 장기 상비예비군(70~180일 소집) 임무수행은 현실적으로 제한되므로 병행이 제한되는 인원은 미선발함.
(직장 업무수행으로 마찰 발생 시 장기 상비예비군 해지 조치)
ex)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
- 바.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공군본부(동원과), 모집부대 상비예비군(동원업무)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

- 가.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41
- 나. 공군본부 동원과: 042-552-3411
- 다. 모집부대 연락처: 공고문 ㉠ 모집계획 (모집부대 전화번호) 참고

* 참고법령

- 병역법 제 44조 (병역동원소집대상)

병역동원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작전수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병역동원소집 대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예비역
2.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3.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군인사법 제 11조
 - 국가공무원법 제 35조

- 군인사법 제 10조 (결격사유)

-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6.1.19, 2018.1.16, 2019.1.15>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③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수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
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환수)되지 아니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2018.10.16, 2021.1.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상비예비군 지원접수 및 신원조사 제출 방법

상비예비군 지원접수

1 예비군 홈페이지 / 예비군 앱 접속



1. 예비군 홈페이지 / 예비군 앱 접속
(인터넷 주소창에 yebigun1.mil.kr 입력)
- ① 로그인 : 간편인증 / 휴대폰 본인인증
- ② 상비예비군 지원접수 클릭

2 지원접수시 유의사항



2. 지원접수시 유의사항

- ① 유의사항을 숙독하고 확인란에
✓ 표시하면 지원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

3

지원서 작성

3. 지원서 작성

- ① 개인 신상 작성
 - * 기본정보 외 주소, 직업 등 입력
- ② 군 주요 보직
 - * 본인의 군 경력 입력
(주소지 주민센터, 국방부·육군
민원상담센터 방문 발급 가능)
- ③ 상비예비군 복무
 - * 상비예비군 복무경험자는 복무연도
및 부대 입력
- ④ 상비예비군 신청
 - * 본인의 거주지를 고려하여 모집공고에서
지원을 희망하는 부대, 직책(유형)을
확인 후 1~3지방, 복무일수 선택
 - * 신청은 모든 직위에 대해 할 수 있으나,
모집공고의 계급, 특기가 상이할 경우
미선발될 수 있음.

※ 위 자료는 선발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니 정확하게 입력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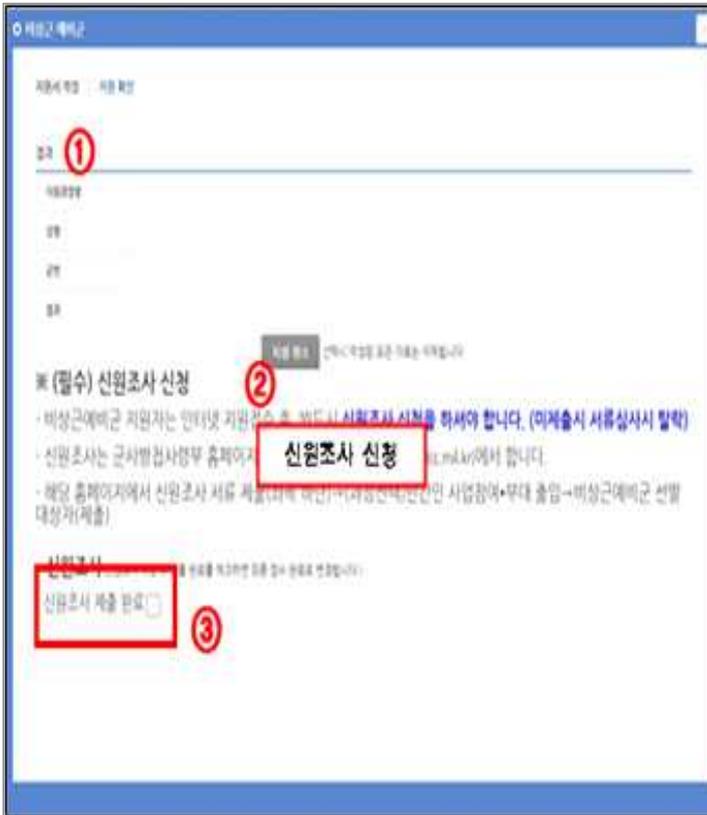
4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4.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해당란에 √ 표시
 - * 미동의시 지원 접수가 되지 않음.

5 지원 확인 (접수대기 ⇨ 접수 완료)



5. 지원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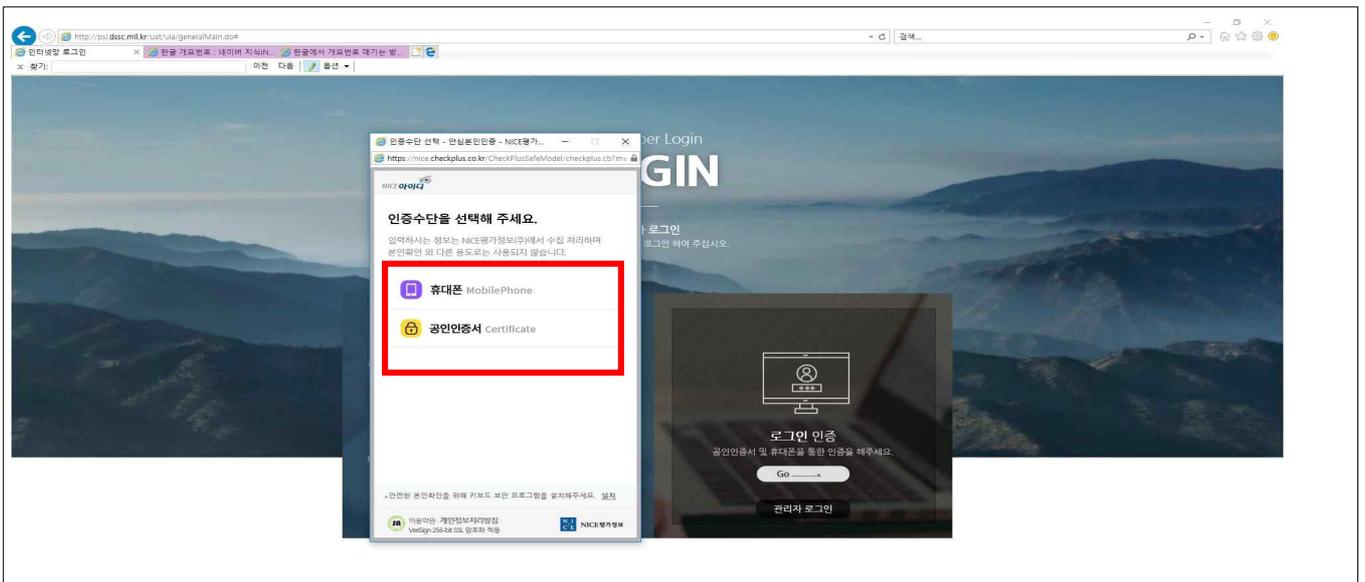
- ① 지원과정명, 성명, 군번, 결과 확인 ⇨ 접수 대기
- ② 신원조사 신청 클릭시 국군방첩사령부 신원조사 서류 제출 화면으로 이동
 - * 상비에비군 복무를 위해 신원조사가 꼭 필요.
- ③ 신원조사 서류 제출 후 상비에비군 지원접수에서 서류제출 완료 √ 표시 ⇨ 접수 완료

신원조사 서류제출

1 국군방첩사령부 신원조회 신청 로그인(메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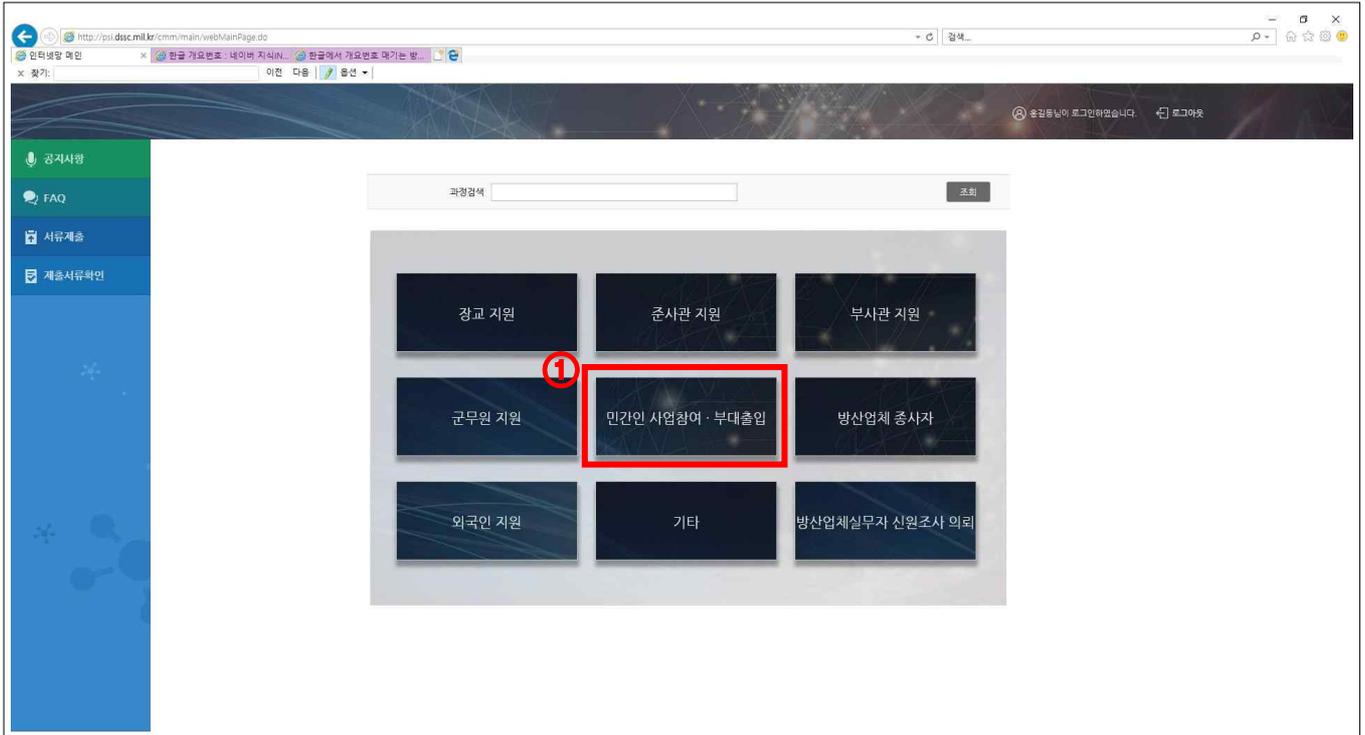
- ① 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 주소창에 'www.dcc.mil.kr' 직접 입력 또는 국군방첩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내 신원조사 전산화 시스템 배너로 접속) → ② 신원조사 서류제출 배너 클릭 → ③ 로그인 인증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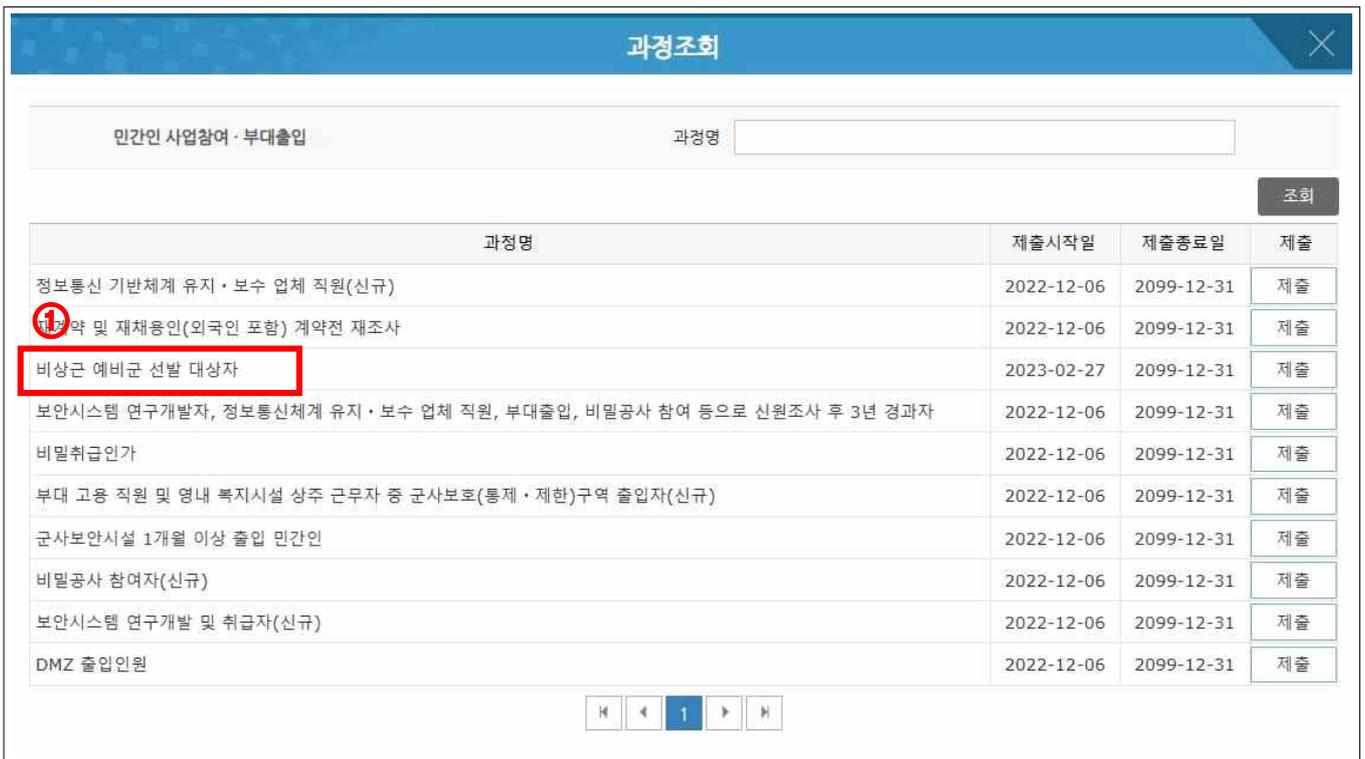
《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개인인증 》

2

과정선택



① “민간인 사업참여 · 부대출입” 선택



① “비상근 예비군 선발 대상자” 제출 선택

3

서류제출

서류제출

과정명 부대... ① 신원진술서 B ② 제출

신원진술서 B

신원진술서(B)

성명(한자) (한글) (주소록) (한자) 개명여부

주민등록번호 760121 - 변경여부

등록기준지 (출생지)

주소

실거주지

연락처 자택 휴대폰

직장전화

직장 직장명

소재지

사진 (3cm * 4cm)

학력사항

| <input type="checkbox"/> | 학교명 | 학력구분 | 시작년월 | 종료년월 | 전공학과 | 학위 | 소재지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text"/> | 초등학교 | <input type="text"/>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text"/> | 중학교 | <input type="text"/>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text"/> | 고등학교 | <input type="text"/> |

① 신원진술서 B형 작성 (개인정보, 학력사항, 경력사항, 해외 거주 사실, 병역사항, 가족관계 입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② 제출

4

서류제출 확인

서류제출확인

| 과정명 | 제출일자 | 제출시각 | 제출종료일 | 추가제출 |
|------------|------------|------------|------------|------|
| 민간인 비밀취급인가 | 2020-03-09 | 2019-12-08 | 2031-12-31 | 추가제출 |

① 제출서류 확인 클릭 → ② 제출 과정 및 제출일자 등 확인
 → 비상근예비군 지원접수 로그인하여 서류제출 확인 클릭 → 접수 완료